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8. 18.(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3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주)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2021-34-110)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주)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제이디투자 유한회사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 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다. <나> [별지] 와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제이디투자(유)가 신청한 (주)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 <3> 신청현황입니다. <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입니다. 제이디투자(유)는 2021년 5월 4일 (주)광주방송의 지분 35%를 (주)호반건설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5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최다액출자자 개요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추진 경과입니다. 2021년 5월 1일 공정위는 (주)호반건설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고, 5월 4일 (주)호반건설은 제이디투자(유)와 (주)광주방송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식 취득 현황은 (주)호반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주)광주방송 주식 39.59% 중 35%를 제이디투자(유)가 매수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4일 (주)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지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4>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방송·미디어, 경제·경영·회계, 법률, 시청자 분야의 전문가 6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안형환 상임위원님께서 심사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다음 <5> 심사 항목은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6> 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인 제이디투자(유)가 제출한 (주)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이디아이 홀딩스(유) 최대주주이며 ‘신청인의 실질적 지배자인 정서진’(이하 ‘실질적 지배자’)은 방송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재정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지상파 방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경영투명성 및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신청인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실질적 지배자가 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지배구조 개편계획을 제출하는 등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의지가 확인됨. 방송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실질적 지배자의 친인척 및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공개채용제도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함. 다만, (주)광주방송 경영진의 전문성 및 투명한 경영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진 및 경영진 구성 시, 독립적인 인사추천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신청인은 자본총계는 약 498억원, 부채는 300만원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며, 실질적 지배자는 '2018년 아시아신탁(주)의 지분 60%를 매각하여 확보한 자금 1,934억원 이외에 잔여지분이 약 1,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재정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지배구조 개편 및 주식회사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고 (주)광주방송 지원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과 실질적 지배자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승인조건과 권고사항 부가를 건의함. <7> 검토 의견입니다. <가> 변경승인 여부입니다. 제이디투자(유)의 (주)광주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승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입니다.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신청법인의 경영투명성 및 실질적 지배자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신청법인의 주식회사 전환과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 중이고, (주)광주방송 지원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아래의 승인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승인 조건(안)입니다. <1> (주)광주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신청인 및 제이디아이홀딩스(유)의 최대주주가 심사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경영 투명성 확보”,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준수”, “방송의 사적이용 금지” 등을 담은 ‘이행 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을 것. <2> 신청인이 “(주)광주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에서 제시한 계획에 따라 변경승인 후 ‘제이디투자(유)의 주식회사로의 전환은 6개월 이내, 지배구조 개편은 1년 이내에 완료’하고 각각의 이행실적을 이행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3> 신청인이 “(주)광주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에서 제시한 (주)광주방송 “멀티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설립 지원”, “콘텐츠 유통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종합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변경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권고사항(안)입니다. (주)광주방송 경영진의 전문성 및 투명한 경영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진 및 경영진 구성 시, 독립적인 인사추천위원회를 운영할 것. <8>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8월 중으로 (주)광주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로 (주)광주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첨부하였고, <붙임>으로 (주)광주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이행각서,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변경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안형환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형환 상임위원

-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지상파방송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광주방송의 경우 최대주주가 그동안 네 번이나 바뀌었고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이 같은 상황

에서 이번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의 중점사항은 새로운 최대주주가 (주)광주방송이 어려울 때 혹은 새로운 사업 돌파구를 모색할 때 최대주주로서 책임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또 (주)광주방송이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의지와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방송의 공공성, 보도의 공정성 등 (주)광주방송의 공적 기능 수행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지가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이디투자(유)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정서진 씨에 대한 의견청취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평가는 최대주주 본인이 언론인 출신답게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보였다는 것, 그리고 (주)광주방송을 뒷받침할 재정적 능력 또한 상당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밖에 제이디투자(유)와 (주)광주방송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등을 약속하고 각서로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심사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최대주주가 방송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 방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확인된다는 평가를 하면서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해도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지역방송의 최대주주는 건설업을 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던 언론과는 관련 없는 자본이 들어와서 언론사를 운영했었는데 이번의 경우를 보면 언론사 출신으로 재력이 확보된 분이 방송사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점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심사의 조건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무처가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비슷한 의견입니다. 사무처와 또 심사위원회 뜻을 존중합니다. 다만, 철저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제이디투자(유)가 제출한 이행각서와 또 권고사항들이 잘 지켜지는지 사무처에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안형환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세부계획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관련 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을 구체화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지역방송 위기 극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전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주)매일경제신문사의 「방송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1-34-111)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주)매일경제신문사의 「방송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주)매일경제신문사의 「방송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가>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는 주식회사 매일방송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 소유하여 「방송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동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나>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는 '가. 시정명령'의 기한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 그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 제출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방송법」 제8조 제3항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에 2021년 3월 말까지 위반사항을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함에 따라 「방송법」 제8조 제13항에 의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경과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피심인 일반현황입니다. (주)매일경제신문사는 신문 및 잡지 발행, 인쇄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20년 말 현재 자본금은 346억원, 최대주주는 (재)정진기언론문화재단 4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방송법」 위반사항입니다. 「방송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심인은 2021년 7월 30일 현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매일방송의 주식을 31.88%를 소유하고 있어 「방송법」상 일간신문사가 소유할 수 있는 지분비율 3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매일경제신문사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통위의 시정명령 사전 통지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입니다. 「방송법」 위반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한 결과, (주)매일방송의 주식 일부(40만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초과 소유 주식의 일부를 해소한 바 있고, 위반사항 추가 해소를 위해 매각, 증여, 감자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 결과, (주)매일방송의 업무정지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주)매일방송이 '20년 재승인 시 부가받은 재승인 조건에 따라 201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바, 유상증자가 완료될 경우, 「방송법」 소유제한 규정의 위반사항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매일방송은 2021년 말까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인수되지 않은 실권주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말까지 제3자 배정을 거쳐 유상증자를 완수할 예정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아울러,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매일방송의 유상증자 실행과는 별개로 추가 매수자의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사무처 검토 의견입니다. 지난해 11월 「방송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하고 있는 피심인에 「방송법」 제8조 위반사항을 2021년 3월 말까지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법」 제106조에 따라 피심인 및 그 대표자를 관련기관에 고발하거나, 2차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주)매일방송이 재승인 조건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 계획이 성공할 경우 피심인의 지분율이 30% 이하로 낮아질 수 있는 점, 1차 시정명령 사전통지 후 주식(40만주)을 일부 매각하였고 추가 매수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정명령 부과 시 시정 기한은 (주)매일방송의 유상증자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방송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기한인 6개월로 하여 피심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피심인이 이번 시정명령의 기한까지 초과 지분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피심인의 시정명령 통보를 8월 말 정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은 첫 번째 관련 법령, 두 번째 피심인의 제출의견, 세 번째 피심인의 (주)매일방송 지분소유 현황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1차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못한 것이지요? 3월 말까지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황이지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작년에 시정명령을 처분할 때, (주)매일경제신문사에서는 (주)매일방송 주식의 매수자를 찾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주)매일방송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했던 건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어 매수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업무정지 결정이 나오니까 유상증자 등 뭐든 주식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지요?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환경이 안 바뀐 것 아닙니까? 6개월의 시간을 주면 이번에는 그것이 고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작년 1차 시정명령 때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지 못했으나, 이번 2차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통지 이후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는 고발하거나 한 번 더 연장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고발해서 우리가 얻는 실익이 있습니까?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현재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106조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2차 시정명령을 처분하고 (주)매일경제신문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부분은 또 그 이후에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있는 당사자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위반사항을 해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고발까지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계획을 제출했으니깐 한 번 더 시정명령을 내리고 만일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주)매일경제신문사의 방송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가 작년 11월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매일방송의 사정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미이행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법 위반사항 해결을 위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만큼 이번만큼은 그 방법이 유상증자가 됐든 매각이 됐든 스스로 밝힌 이런 법 위반 해소 방법들을 통해서 정해진 기간 내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피심인이 장기적으로 법 위반 해소가 어려운 상황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2차 시정명령 부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후 성공적인 유상증자 등을 통해 소유제한 위반 상황 해소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특히 최고경영진의 희생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피심인의 의견과 같이 (주)매일방송의 행정처분 및 재승인 조건과 맞물려 위반상태 해소를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었다는 특수한 상황이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위반상태가 해소될 수 있는 (주)매일방송의 유상증자가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를 해소 하도록 추가 기한을 부여하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내년 2월까지 위반사항을 완벽하게 해소 해 주기를 바라는 말씀과 함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1-34-112)**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1-34-113)**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다>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안건 다>와 <의결안건 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은 2건의 논의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함께 묶어서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건을 이어서 보고해 주시고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 와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과징금 산정 시 관련매출액의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추진 경과는 지난 5월 18일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방통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규제심사 및 6월부터 관계부처 의견조회,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을 거쳤습니다. <4>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매출액 산정 시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관련매출액’과 ‘관련서비스’의 정의 및 위반기간 산정기준의 고려사항을 별표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시장에 미친 영향, 이용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정도와 같은 고려사항을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부과기준율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건입니다. 현행 방송법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지금 현재는 고시에 있던 것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방송협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있는 부과기준율과 관련하여 부과기준율 및 부과금액을 구간별로 설정하여 입법예고하였는데 중대성 판단 단계에서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있는 만큼 기준율이나 기준금액을 정률·정액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 저희가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타법에서도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구간을 두어 행정청의 판단과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반 정도나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방통위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므로 불수용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9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올해 안에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관보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안건 라>번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 주문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 와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2> 제안 이유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중대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추진 경과는 방송법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제시 의견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 시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관련 고려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고려사항 3페이지 <표>에 보시면 시장에 미친 영향, 이용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정도를 고려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부과기준율을 상한조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상한을 2.5%에서 2%로 조정하고,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부과기준금액은 현행 IPTV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기준금액 및 위반기간 산정기준의 고려사항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9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관보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동의 의견이십니까?

○ **김효제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과징금 처분은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가급적 법령에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방송법과 IPTV법 시행령 개정은 처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하신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해서 공정한 방송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방송사업자는 연평균 매출액, IPTV 사업자는 관련매출액으로 서로 달랐던 것을 동일하게 하고, 중대성 판단기준을 신설하는 등 과징금 산정규정을 정비하여 규제 형평성과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보고 시 업무 추진 속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남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에 잘 대응하여 계획대로 올해 중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2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8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0분 폐회 】